



NOIX DE MUSCADE



SAFRAN



CLOS DE GIROFLE



CARDAMOME
NOIRE VERTE BLAN



BADIANE
ANIS ETOILE



GENIEVRE



LIQUIÇUE



SÉCHOUAN



ANIS VERT



PINEAU

제2차 한국 ABS포럼

일시 | 2012년 9월 3일(월) 15:00 ~ 18:30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주관 | 한국 ABS포럼

주최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초대 의 글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의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 ABS포럼이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 제1차 포럼세미나에 이어 이번에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나고야의정서 후속협상회의의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측이 취할 필요가 있는 국내 조치들의 내용을 총정리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7월 2일부터 6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차 나고야의정서 대비 정부간 회의에서는 개도국의 능력형성, 이익공유, 정보공유기관 설치, 의무준수 감시체제 등과 같은 핵심 이행사안들에 대해 정책방향과 모델리티에 대한 열띤 토론과 협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결과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총정리하여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에 관한 방향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요 유전자원 이용국들의 ABS 국내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우리의 이행 체계 구축에 적극 참고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 기간 동안에도 어려운 주제를 맡아 발표를 준비해주신 발제자께 감사드리고, 지정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각계 전문가, 정책담당자 및 관련 기업인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나고야 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과 ABS에 대한 인식제고에 격의 없는 토론을 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ABS 포럼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니셔티브로 운영되며,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대화의 장입니다.

2012년 8월

한국 ABS포럼 회장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

행사 일정

시 간	내 용	
15:00~15:05	개회사 (ABS포럼 회장)	
15:05~15:15	인사말 (국립생물자원관장)	
15:15~16:20	[제1세션] 나고야의정서 후속협상회의 동향 - 정부간회의(ICNP2) 현황과 이행 필요사항	사회자: 최원목 교수 발표자: 정수명 사무관 토론자: 박수진 박사, 이주하 박사
16:20~16:40	휴식	
16:40~17:50	[제2세션] 주요 유전자원 이용국들의 ABS 국내이행체계 비교분석	사회자: 이병희 박사 발표자: 오선영 교수 토론자: 이연희 교수, 박용하 박사
17:50~18:00	폐회사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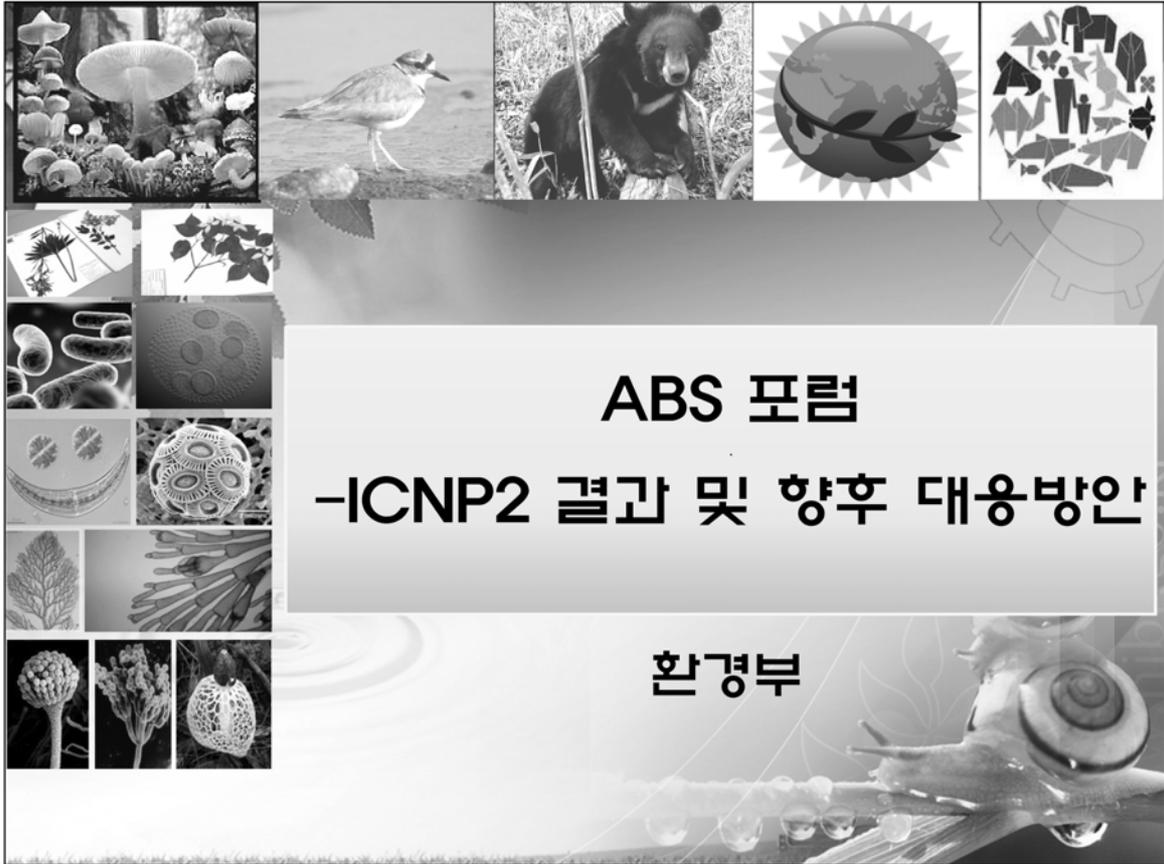
1. ICNP2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1
: 정수명 사무관 (환경부)

2. 유전자원 이용국들의 ABS 국내이행체계 비교분석 9
: 오선영 교수 (승실대학교)

[제2차 한국 ABS포럼]

1. ICNP2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정수명 사무관 (환경부)



목 차

- I. ICNP2 주요 회의결과
- II. 각 국의 비준관련 동향
- III. 향후 대응방안



I . ICNP2 주요 결과보고

제 2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ICNP2)

- 회 의 명 : 제2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ICNP2)
 ※ Second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Nagoya Protocol
- 기간 및 장소 : 2012. 7. 2(월)~6(금), 인도 뉴델리
- 참가자 : 193개 CBD당사국, 국제기구, NGO, 산업계 등
 ※ 우리나라는 환경부 담당사무관 및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등 참석
- 주요 의제 : 나고야 의정서 관련 주요 쟁점사항
 -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 체계 (의정서 제 10조)
 - 의무준수 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의정서 제 30조)
 -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 House) 시범운영 방안
 - 재정체계와 자원동원전략 등
- 국가 대표단 활동 : 의제 관련하여 국가입장 발표, 양자회담 등

I . ICNP2 주요 결과보고

제 2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ICNP2)

회의 결과

- 세계다자간 이익공유체계(의정서 제10조)
 - 나고야 의정서 제 10조를 해석하기 위한 9개 질문과 20개의 부가적인 질문을 마련
 - 예) transboundary situation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종이 둘 이상의 국가에 분포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해야 하는가?
 - 마련한 질문에 관하여 각국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도록 CoP11에 제출할 권고문 작성

I . ICNP2 주요 결과보고

제 2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ICNP2)

회의 결과

- 의무준수(의정서 제 30조)
 - 당사국들 사이 의견대립으로 일치된 권고안을 이끌어내지 못함
 - 개도국 : 강력한 법적 구속력 주장
 - 선진국 : 유연한 운영 주장
 - 한국은 경제적 불이익 등 강한 처벌은 의정서 제4조와 모순됨을 지적하며 유연한 운영을 주장하는 논의에 기여
 - 미합의된 사항은 차기 ICNP 또는 CoP-MoP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합의

I. ICNP2 주요 결과보고

제 2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ICNP2)

회의 결과

● ABS 정보공유체계

- 시범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하여 운영할 것 결정
- 비공식 전문가 위원회를 수립,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도록 결정
- 한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정보공유체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시범운영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개진



II. 각 국의 비준관련 동향

1. 비공식 라운드테이블 결과

- **대부분 '14년도 비준을 목표로 추진**
 - CoP12가 첫 번째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총회가 되어야 할 것에 합의
-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가 관찰됨**
 - 개도국은 의정서가 조속하게 발효될 것을, 선진국은 발효이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 **나고야 의정서 국내이행제도 구축을 강조**
 -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구축으로 강조

II. 각 국의 비준관련 동향

2. EU 등 양자회담 결과

- **'14년도 비준을 목표로 추진**
 - '15년도 EU의회 선거이전 비준을 목표로 추진 중
- **국내 이행제도에 의무준수 조항만 마련**
 - ABS 이행제도는 EU전체 차원에서 마련→ 국가 특성 반영하여 적용
 - EU 전체 차원의 제도에는 EU 이용자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시 의무준수 조항만 마련하고,
 - 해외 이용자의 EU 유전자원 접근에 대해서는 PIC발급 및 이익공유 등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
 - ILCs 보호가 필요한 국가와 일부 국가(스위스, 영국 등)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가 PIC, MAT제도를 마련하지 않을 예정임을 밝힘



III. 향후 대응방안

1. 회의의 성과 평가

- **정부간 위원회 한계의 아쉬움**
 - 결정권한이 없는 '정부간 위원회'라는 회의 특성상, 주요 핵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음
 - 국가간 나고야 의정서 관련 현황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 ABS-CH의 시범운영 협력국가 참여 검토 필요

- **선진국의 국내이행제도 파악**
 -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PIC, MAT제도를 마련하지 않을 계획을 밝힘
 - 향후 ABS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의 의도 파악이 필요

III. 향후 대응방안

2. 향후 과제 및 대응방안

- 국가 차원의 제공국/이용국 입장정립 필요
 - 대표적 선진국인 EU의 정책이 극단적인 이용국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국내정책 수립 및 국제협상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검토 필요
-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의 활성화
 -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 반입,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파악
 - 국내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정보 수집
 - ABS-CH의 시범운영 협력국가 참여 검토
- 각 국의 ABS 국내이행제도에 관한 파악
 -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ABS 이행체제 파악 및 분석
 - 국내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 토의 필요

감사합니다!

구상나무 크리스마스 트리 털개회나무 미스킴라일락 원추리 하루백합

Syringa Miss Kim
✓ Heavy blooming & very fragrant
✓ Superb 5' tall flowering (100% plant)
✓ Compact grower with 5" flower trusses
✓ Excellent resistance to powdery mildew
✓ Best selection for Southern gardens
Zone 3, 4, 5, 6, 7, 8 Blooms Late Spring
2' x 2'
As LOW as \$14.95 each!

Perfect flowering Hedge Plant with fragrance!

www.nibr.go.kr

2. 유전자원 이용국들의 ABS 국내이행체계 비교분석

오선영 교수 (송실대학교)

유전자원 이용국들의 ABS 국내이행체계 비교분석

승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오 선 영

연구 방법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관련 필요사항 및 주요의무 분석**
 - 나고야의정서 관련 조문분석
 - 타당사국들의 현황 조사 및 비교법적 연구진행

ABS 국내이행 필수사항

- 유전자원 접근 (Access) 및 이익공유 (Benefit-Sharing) 체계 수립
-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및 국가 연락기관 (National Focal Points) 설치
- 의무준수 (Compliance)
-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점검 (Monitoring/ Checkpoints)
- ABS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센터 (Clearing House)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관련 조문

• 제13조 2항

각 당사국들은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해당 국내 법률 및 행정 또는 정책 조치에 따라 접근의 허용 또는 (해당되는 경우), 접근 여건이 충족되었다는 문서를 발급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그리고 PIC의 취득과 MAT을 체결하기 위한 해당 절차와 요건에 대해 자문하는 책임을 진다

단독 혹은 복수 국가책임기관 지정의 장점 비교

단독 국가책임기관 체제

- 유전자원 이용자는 하나의 책임기관에 연락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 (administrative burden) 이 경감됨
-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기관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혼동이 줄어듦
- 타 기관과의 업무 중첩성을 피할 수 있음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절차에 대한 단일한 업무진행으로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

복수 국가책임기관 체제

- 각각의 국가책임기관이 각자의 업무 분담에 따른 책임만을 짐

단독 혹은 복수 국가책임기관 지정의 단점 비교

단독 국가책임기관 체제	복수 국가책임기관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기관에 과중 업무 부담 증가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타 기관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책임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절차를 요구하기 이전에 어느 기관이 어떠한 책임분야를 담당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함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절차가 기관마다 다를 경우,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

타 당사국들의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8월 3일 기준, 총 30개 당사국들이 국가책임기관의 정보를 제출함 • 호주를 비롯하여 총 25 당사국들이 하나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나머지 5개 당사국들은 두 개 이상의 국가책임을 지정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Trade & Industry) 및 농림수산업성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에서 각각 국가책임기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상의 국가책임기관



- 국내의 국가책임기관은 지식경제부가 맡고 있으며, 국가연락기관은 외교통상부가 담당하고 있음
- 또한 LMO 용도에 따라 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있음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점검 및 점검기관



**MONITORING
&
CHECKPOINTS**

점검기관의 역할 및 기능: 관련 조문

- 제17조 1항 (a)호

각 당사국은 의무준수 (compliance)를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을 점검 (monitor)하고 투명성을 제고 (enhance)하기 위해, (적절한 바에 따라),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을 반드시 지정 (designation)해야 한다 (shall)

점검기관의 역할 및 기능: 관련 조문

- 제17조 1항 (a)(i)

지정된 점검기관은 PIC, 유전자원 출처, MAT의 체결,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계가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적절한 바에 따라), 수집 (collect) 또는 수령 (receive) 할 것이다 (Would)

점검기관의 역할 및 기능: 관련 조문

- 제 17조 1항 (a)(ii)

제 1문: 각 당사국은 (적절한 바에 따라, 그리고 지정된 점검기관의 특정 성격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자에게 지정된 점검기관에 상기(a)호의 특정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 2문: 각 당사국은 의무준수의 위반상황을 시정할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 제 17조 1항 (a)(iii) & (iv)

점검기관의 범위

- 단독기관으로 신설할 것인가? 또는 기존의 기관들을 점검기관으로 활용할 것인가?
- 소결론

타 당사국들의 동향

- 유전자원 이용국
- 유전자원 부유국

인도: 유전자원 접근 신청자는 정기적으로 현황보고서를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에 제출하여야 함

필리핀: Bioprospecting Undertaking의 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연간 진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서에는 PIC의 조달사항과, 샘플 수집진행, 이익공유 협상과 지불의 진행 과정에 대해 기술해야 함

코스타리카: 허가가 발급된 신청자는 업데이트 보고서를 계속 제출하여야 함

ABS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 센터

ACCESS & BENEFIT-SHARING

CLEARING HOUSE

관련 조문

• 제14조

접근및이익공유정보센터 (이하, 정보센터)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8조3항에 근거하여 정보교환 및 공유기구체제의 일환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정보센터는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정보의 교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국내에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보센터 (한국나고야정보센터)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타 당사국들의 동향

• 네덜란드:

- The Centre for Genetic Resources, the Netherlands에 의해 인터넷 포털이 운영 중이며 이는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에 의해 감독되고 있음
- CBD의 국내이행을 위해 네덜란드생물다양성정보센터 (Netherlands Clearing-House Mechanisms for Biodiversity)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 The South African Access and Benefit Sharing Clearing-House는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ABS 관련 각종 자료들을 인터넷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orea Biosafety Clearing-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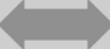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LMO 정보관리 및 정보교환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한국 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됨
- 2002년부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가책임기관인 지식경제부(구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 LMO 관련 정보의 수집, 교환, 공유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한국바이오산업정보센터가 공식 운영됨

한국나고야정보센터

정보 의무준수

의정서 이행지원

홍보



THANK YOU



승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오 선 영

SUNOH@SSU.AC.KR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intended for handwriting practice.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from the left margin to the right margin.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solid horizontal lin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from the left margin to the right margin.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solid horizontal lin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from the left margin to the right margin.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solid horizontal line.